

학교법인 배달학원

2025학년도 19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0인	재적이사수	10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1. 일 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8월 11일)

2. 장 소 : 시그마타워 7층 한라라운지 회의실1(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9인) : 심상덕, 김익래, 김한원, 민병훈, 이미숙, 송기정, 박용환, 김병란, 이권철
- 감사(2인) : 강홍원, 송동기

○ 불참 임원

- 이사(1인) : 정승화

○ 참석 교직원

- 학교(4인) : 총장 김응권, 교무처장 오진성, 기획처장 조용남, 총무처장 최준규
- 법인(1인) : 과장 박지원

4. 안 건

- (1)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심의
- (2) 교원 인사에 관한 심의
- (3)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에 관한 심의
- (4)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임명에 관한 심의
- (5)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 이사정수 10인 중 9인이 참석함에 따라 제196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선언한다.

<제1안건>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

- 의 장 :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 기획처장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 의 장 :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이 원안 <별첨1>대로 의결되

간서명			
-----	---	--	---

있음을 선포하다.

<제2안건> 교원 인사에 관한 심의

의 장 :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교무처장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교원 인사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외 1인을 신규임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안건은 사립학교
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다.

< 다 음 >

• 교원 신규임용(2명)

No.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재임용 기간	비 고
1			조교수	미래모빌리티공학과	2025.09.02. ~ 2027.08.31.	정년트랙
2			조교수	SW중심대학사업단	2025.09.01. ~ 2027.08.31.	비정년트랙

<제3안건>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에 관한 심의

의 장 :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총무처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총무처장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다.

의 장 :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하
다.

< 다 음 >

1.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허가 변경 대상 재산

구분	지번 ^{주1)}	지목	사용면적(m ²)	증감(m ²)
기존	홍업면 홍업리1747-2	학교용지	3,071	
	홍업면 홍업리 1755	학교용지	3,929	
	합계		7,000	
변경	홍업면 홍업리 1747-4(분필)	학교용지	3,070	-1
	홍업면 홍업리 1755(분필)	학교용지	3,668	+15
	홍업면 홍업리 1755-3(분필)	학교용지	276	
	합계		7,014	+14

주1) 기존 사용허가받은 지번을 건축대장 발급을 위하여 필지분할한 후 실제 사용 지번으로 대상 재산 변경.

2. 사용허가 변경 사유 : 토지사용 대상기관인 원주시가 건축 준공 후 해당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지적측량을 진행한 결과, 14m²의 공차가 발생하여 당초 승인받
은 사용 면적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함.

간서명	이권재 박용환 이미숙
-----	-------------

- 3. 사용허가 변경 요청기관 : 원주시
- 4. 사용허가 기간 : 기존 교육부 승인일과 동일(2022.09.27.부터 30년간)
- 5.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총액 : 1,252,700천원(m²당 178,600원)

<제4안건>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임명에 관한 심의

의 장 :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상임이사에게 설명하게 하다.
상임이사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교원징계위원회 권성중 외부위원의 임기가 2025년 5월 19일에 만료됨을 알린 후 권성중 외부위원 연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교원 징계위원 외부위원 임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권성중 외부위원의 연임을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원징계위원회 권성중 위원을 연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고, 권성중 위원의 연임기간은 2025.5.20. ~ 2028.5.19.(3년)로 한다고 선포하다.

<제5안건>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심의

의 장 :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상임이사에게 설명하게 하다.
상임이사 :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자료에 의거하여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 장 :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이 사 들 : 상호 토의 후,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하여 찬성하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규정」을 <별첨2>와 같이 제정한다고 선포하다.

6. 폐회 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록 간서명자로 박용환 이사, 이미숙 이사, 이권철 이사를 정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8월 22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심 상 덕 (서명)	<u>심상덕</u>
	이 사	김 익 래 (서명)	<u>김익래</u>
	이 사	김 한 원 (서명)	<u>김한원</u>
	이 사	민 병 훈 (서명)	<u>민병훈</u>
간서명	<u>이권철</u>	<u>박용환</u>	<u>이미숙</u>

이 사 이 미 숙 (서명) 이미숙

이 사 송 기 정 (서명) 송기정

이 사 박 용 환 (서명) 박용환

이 사 김 병 란 (서명) 김병란

이 사 이 권 철 (서명) 이권철

감 사 강 홍 원 (서명) 강홍원

감 사 송 동 기 (서명) 송동기

간서명	<u>이권철</u>	<u>박용환</u>	<u>이미숙</u>
-----	------------	------------	------------

<별첨1>

2025회계연도 한라대학교 2차 추경예산(안)

(2025. 3. 1. ~ 2026. 2. 28.)

예 산 총 칙

1) 자금예산의 규모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 수입, 지출 총액은 각각 46,358,000,000원 이다.
수입,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서와 같다.
예산의 단위, 산출근거의 단위는 원으로 한다.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종합발전계획서 VISION 2030+ 및 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이 연계되도록 우선 편성
- ② 수입 확충,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성과 향상 등으로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

3) 주요 사업계획의 개요

(단위:원)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예산액	계정과목	예산액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21,096,745,737	보수	17,933,230,898
전입 및 기부수입	21,738,082,212	관리운영비	9,042,663,910
교육부대수입	2,859,973,954	연구학생경비	16,075,381,766
교육외수입	131,304,923	교육외비용	96,663,726
		예비비	100,0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3,054,484,700
		유동·고정부채상환	55,575,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31,893,17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계	46,358,000,000	계	46,358,000,000

4) 신규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한도는 0원으로 한다.

5) 예산전용

자금예산을 초과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상치 못한 인건비 등 예산초과지출 항목이 발생하였을 때 충당한다.

7)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사업에 참여하며, 책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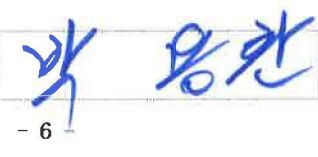
간서명			
-----	---	--	---

○ 주요 사업 상세 내역

1.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차 추경예산 (A)	2025년 1차 추경예산 (B)	2025년 본예산 (C)	증 감 (A-B)	증 감 (A-C)	비 고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21,097	21,129	21,086	-32	11	-학과(부) : 20,117 -대학원 : 299 -단기수강료 : 681(-32)
법인전입금 수입	1,910	1,910	1,910	0	0	-경상비전입금 : 539 -법정부담금 : 1,371
기부금수입	560	543	543	17	17	-일반기부금 : 246(+5) -지정기부금 : 314(+12)
국고보조금 수입	19,118	12,782	15,523	6,336	3,595	-국가장학지원금 : 8,317 -교육부지원금 : 9,052(+6,444) -기타국고지원금 : 1,333(-168) -지자체지원금 : 416(+60)
산학협력단 전입금	150	6,450	150	-6,300	0	-산학협력단전입금 : 150 -RISE사업전입금 : 0(-6,300)
교육부대수입	2,860	2,834	2,825	26	35	-수험료 : 1 -시설사용료 : 332(-2) -학생생활관 : 1,618 -식당수입 : 776(+12) -UB메트로수입 : 84 -증명료 등 : 49(+16)
교육외수입	131	126	121	5	10	-예금이자 : 112 -잡수입 : 19(+5)
전기이월자금	532	532	457	0	75	-이월금 : 532
계	46,358	46,306	42,615	52	3,743	

간서명  박 용환  이미숙

2.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차 추경예산 (A)	2025년 1차 추경예산 (B)	2025년 본예산 (C)	증 감 (A-B)	증 감 (A-C)	비 고
보 수	17,933	17,214	16,953	719	980	-교원보수 : 11,746(+188) -직원보수 : 6,187(+531)
관리 • 운영비	9,043	7,725	6,417	1,318	2,626	-시설관리비 : 3,368(+42) -일반관리비 : 1,621(+106) -운영비 : 4,054(+1,170)
연구비	388	338	217	50	171	-연구비 : 278(-60) -연구관리비 : 110(+110)
학생경비	15,209	16,763	14,822	-1,554	387	-국가장학금 : 8,317 -교외장학금 : 831(-681) -교내장학금 : 4,019 -학생경비 : 2,042(-873)
입시 관리비	478	478	477	0	1	-입시경비 : 478
지급이자 잡손실	97	109	126	-12	-29	-사학차입금이자 : 0.4 -자퇴생등록금환불등 : 97(-12)
예비비	100	100	100	0	0	-일반예비비 : 100
고정자산 매입지출	3,054	3,522	3,446	-468	-392	-건물 : 86(+18) -기계기구 : 1,731(-541) -집기비품 : 499(+19) -차량운반구 : 36(+36) -도서 : 202 -건설중인자산 : 500
유동성장기 부채상환	56	56	56	0	0	-사학차입금상환 : 56
고정부채상환	0	1	1	-1	-1	-임대보증금환급 : 1
차기이월자금	0	0	0	0	0	
계	46,358	46,306	42,615	52	3,743	

간서명 이권준 박 용환 이대식

징계사면 및 징계기록 말소에 관한 규정

제정 : 2025.8.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배달학원(이하 “법인”이라 함) 임직원 및 한라대학교(이하 “한라대”라 함)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과 징계처분 및/또는 직위해제(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함)의 기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성실한 근무분위기 및 조직화합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 임직원 및 한라대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별사면: 징계처분을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사면: 특정시점 이전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일괄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면의 대상 및 기준)

- ①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고 개선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1. 파면: 징계처분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자
 2. 해임: 징계처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3. 정직: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4. 감봉: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5. 견책: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② 징계를 사면함으로써 조직 분위기 개선 및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3.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재징계가 확정된 자
 4.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학생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중대한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된 자

제5조(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

간서명	이진근	박응환	이이도
-----	-----	-----	-----

- ① 징계사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내에 사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외부위원도 포함될 수 있음)으로 구성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6조(사면 제청, 직권 요구)

- ① 총장은 일반사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 또는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에게 사면을 제청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사면 심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장의 사면제청 및 이사장의 사면심의 요구시에는 사면대상자의 인적사항, 해당 징계처분명, 징계처분기간, 징계처분의 주요이유, 징계사면 제청 또는 심의요구 이유 등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면 심의 및 결정)

- ① 이사장의 사면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사면 요건의 충족여부, 징계처분 후 개선의 정, 사면이 조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면 여부를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사면 결정의 효과)

- ① 사면 결정시 징계처분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상실되고, 사면된 자는 즉시 복권된다.
- ② 사면된 자는 사면 이전의 징계처분으로 장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9조(사면 결정 후속 조치)

- ① 이사장은 법인 임직원에 대한 사면 결정을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법인 인사 기록에 이를 등재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한다.
- ② 이사장은 한라대 교직원에 대한 사면 결정을 해당 당사자 및 한라대에 통보하고, 총장은 한라대 인사 기록에 이를 등재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한다.
- ③ 이사장 또는 총장은 필요시 사면 결정 사항을 한라대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등의 기록 말소·삭제)

- ① 이사장 또는 총장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9년
 2. 정직: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7년
 3. 감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4. 견책: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5. 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간서명	이권민	박영환	이이도
-----	-----	-----	-----

- ② 징계처분등의 기록 말소 방법은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징계처분등의 기록 여백에 “00년 00월 00일 말소함”이라고 부기한다.
- ③ 이사장 또는 총장은 파면, 해임을 포함한 모든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등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인사기록카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처분등의 기록 말소·삭제의 효과)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 장래에 해당 징계처분등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이사회 승인일)

간서명	이권호	박응환	이비득
-----	-----	-----	-----